간소화자료 제출 매뉴얼 (의료·요양기관용)

① 자료 제출 일정

- (자료제출 대상 기간) '22.1.1. ~ '22.12.31.
 -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1.1. ~ 폐업일까지의 자료
 - ※ 의료비 자료는 매년 3월 이후 상시 제출 가능하므로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자료 제출 가능
- **(자료제출 기한) '23.1.7.**까지 자료 제출(제출시간: 08시 ~ 22시)
 - 부득이한 경우 '23.1.13.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
- '23.1.13.까지 제출한 자료는 1.15.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
- '23. 1. 15.~'23. 1. 18.까지 수정분 및 추가분 자료 제출 가능
 - * 15일 ~ 18일 자료제출 가능 시간은 18시~ 22시
- '23.1.20.부터 수정·추가분을 포함한 최종 간소화자료 제공

② 자료 제출 대상

- 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하여「의료법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(한방병원·요양병원·조산원 포함)에 지급한 비용
 - ※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자료 제출 대상
- 치료·요양을 위하여「약사법」제2조에 따른 의약품(한약 포함)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
- ○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
-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「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^{*}」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
 - * 국세청 고시(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) 제2019 28호(2020. 1. 10.) 별지 3호 서식

③ 의료비 자료 제출 방법

- 병·의원, 약국, 요양기관, 안경·의료기 사업자 등이 2022.1.1. ~12.31.까지의 의료비 내역을 제출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자료제출 방법
- 1) 홈택스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수납 프로그램 (의사랑, 두 번에 등)을 통해 미리 제출 자료를 생성하거나, 엑셀 양식*으로 작성된 의료비 자료를 준비
 - * 엑셀양식은 홈택스→조회/발급→연말정산간소화→소득·세액공제 자료 제출에서「의료비서식」다운로드 가능



2) 「① 로그인」을 선택하여 제출할 기관의 ID로 로그인 후 「② 조회/발급」 선택,「③ 연말정산간소화」 선택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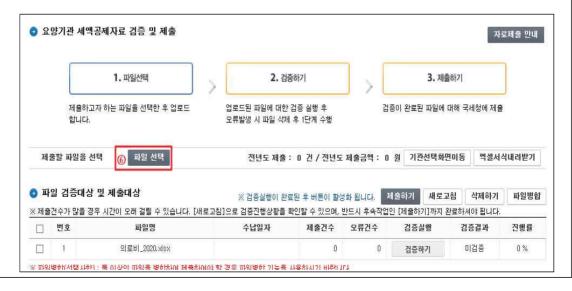
3) [영수증 발급처]에서「④자료제출」선택



4) 「⑤ 제출 자료종류」를 '의료비' 선택한 후,「제출화면이동」 선택

	제출 사업자번호	101-91-56996	제출기관 상호	아무개
(5)	제출 자료종류	의료비	제출구분	의료비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	제출 설명	묘양기관 : 병원, 의원, 약국 등		
	자료종류,기관구분	G0001 - 1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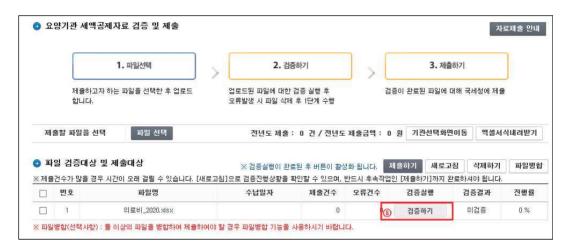
5) 「⑥파일선택」을 선택



6) 파일 업로드 창이 열리면 제출할 파일을 「⑦업로드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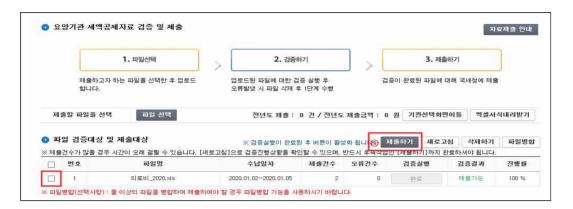
- 「⑧검증하기」를 선택하여 파일내용을 검증



□ 「⑧ 검증하기」단계는 형식검증 단계로 주민번호 자릿수 오류, 제출한 파일의 레이아웃 오류 등을 검증하며,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검증결과에서 오류조회를 클릭하여 오류를 확인·수정하여 「⑥파일선택」단계부터 다시 수행해야 함



- 검증결과가 제출가능인 파일을 체크하고 「⑨제출하기」 선택



- 「⑨제출하기」단계에서는 내용 검증 단계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중복인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며 오류 건을 제외하고는 정상 제출됨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상 자료와 수정 또는 추가 자료 전체를 제출해야 함
-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「파일 제출결과 조회」에서 「⑩오류조회」를 선택하여 오류 확인 및 수정하여 다시 제출



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**국세청 홈택스 → 「자료실 468번」** 게시물 참조

④ 그 밖의 유의사항

- [제출결과 조회]에서 상태가 제출완료인 자료의 제출대상건수가 100건,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임
-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 및 오류가 발견되어 **자료를 다시** 제출하는 경우 누락 및 오류 수정분만 제출하면 당초 제출된 자료를 대체하여 최종 제출 자료만 수록되므로 **수정 또는 추가**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함
- 예)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경우 수정분 10건만 제출시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
- 제출하기 버튼을 누른 후 처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제출건수가 많은 경우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 발송 요청 기능 제공

